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변경내용

1)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
2) 환매수수료 삭제
3)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4)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5)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6)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3. 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06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종류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9.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1.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2. 종류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13. 종류 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14.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A-U 수익증권 3. 종류 C1 수익증권 4. 종류 C2 수익증권 5. 종류 C3 수익증권 6. 종류 C4 수익증권 7. 종류 C5 수익증권 8. 종류 C-F 수익증권	제1항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A-E 수익증권 3. 종류 A-U 수익증권 4. 종류 C1 수익증권 5. 종류 C2 수익증권 6. 종류 C3 수익증권 7. 종류 C4 수익증권 8. 종류 C5 수익증권 9. 종류 C-E 수익증권 10. 종류 C-F 수익증권 11. 종류 C-P 수익증권 12. 종류 C-P2 수익증권 13. 종류 W 수익증권 14. 종류 S 수익증권
제17조(투자대상 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등급이 A-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7. 환매조건부매매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 하나UBS승승장구 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제1항 4. <삭제>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제3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3항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현행과 동일) 2.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현행과 동일) 3. 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현행과 동일)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제5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제5항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2.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시행일 : 2017년 03월 06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39조 (보수)	제3항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	제3항 [종류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87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제40조(판매수수료)	②선취판매수수료는 (생략) 1. 종류 A, A-U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③제2항제1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생략) <신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생략, 현행과 동일) 1. 종류 A, A-U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③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생략, 현행과 동일) ④판매회사는 종류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S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⑥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 제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생략)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td><td><추가></td><td>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종류형 명칭)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종류형 명칭)
<table>
<tr><th>명칭(종류)</th><th>펀드코드</th></tr>
<tr><td>A-E</td><td>BM910</td></tr>
<tr><td>C-E</td><td>BM911</td></tr>
<tr><td>C-P</td><td>BM912</td></tr>
<tr><td>C-P2</td><td>BM913</td></tr>
<tr><td>W</td><td>BM914</td></tr>
<tr><td>S</td><td>BM915</td></tr>
</table></td></tr>
<tr><td rowspan="2">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종류형 명칭)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종류형 명칭)
<table>
<tr><th>명칭(종류)</th><th>펀드코드</th></tr>
<tr><td>A-E</td><td>BM910</td></tr>
<tr><td>C-E</td><td>BM911</td></tr>
<tr><td>C-P</td><td>BM912</td></tr>
<tr><td>C-P2</td><td>BM913</td></tr>
<tr><td>W</td><td>BM914</td></tr>
<tr><td>S</td><td>BM915</td></tr>
</table></td></tr>
<tr><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06일
1)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
2) 환매수수료 삭제
3)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4)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td></tr>
</table>

<table>
<tr><td></td><td></td><td>5)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6)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td></tr>
<tr><td></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table><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td></tr><tr><td>종류 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td></tr></table></td></tr>
</table>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모든 클래스)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모든 클래스)

없음

종류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A-E	(선취)납입금액의 0.5% 이내	연0.3684%	연1.1713%
C-E	없 음	연0.7000%	연1.5026%
C-P	없 음	연0.7000%	연1.5026%
C-P2	없 음	연0.6000%	연0.7446%
W	없 음	연0.0000%	연0.8026%
S	(후취) 3년미만 환매시 납입금액의 0.15%	연0.3000%	연1.1026%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추가>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

		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생략)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생략) **4. 어음** (생략)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8. 환매조건부 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생략, 현행과 동일)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생략, 현행과 동일) **4. 어음** (생략, 현행과 동일)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8.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8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table>
<tr>
<td></td>
<td>-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생략)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
<td>(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
</tr>
<tr>
<td></td>
<td>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td>
<td>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A-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td></tr>
<tr><td>종류 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td></tr>
<tr><td>종류 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td></tr>
</table>
</td>
</tr>
</table>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다. 전환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다. 전환

<삭제>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및 종류 A-U	종류 C1~C5 및 종류 C-F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A-U	종류 A-E	종류 C1~C5, C-F, C-P, C-P2, W	종류 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주)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종류 A, A-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A-E, C-E, C-P, C-P2, W, S 클래스 신설>	U 는 납입금액의 1.0%이내, 종류 A-E 는 납입금액의 0.50% 이내, 종류 S 는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구분	종류 A-E	종류 C-E	종류 C-P	종류 C-P2	종류 W	종류 S
집합투자업자 보수	0.7446	0.7446	0.7446	0.7446	0.7446	0.7446
판매회사 보수	0.3687	0.7000	0.7000	0.6000	0.0000	0.3000
신탁업자 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보수 합계	1.1713	1.5026	1.5026	0.7446	0.8026	1.1026
총보수 및 비용	1.1713	1.5026	1.5026	0.7446	0.8026	1.1026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 후
종류 A-E	170	428	713	1,560
종류	154	485	851	1,937

	<주석 추가>	C-E 종류 C-P: 154 / 485 / 851 / 1,937 종류 C-P2: 76 / 241 / 422 / 960 종류 W: 82 / 259 / 455 / 1,035 종류 S: 113 / 356 / 624 / 1,421 주3) 종류 S 수익증권은 10년동안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7 년 03 월 06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table>
<tr>
<td></td>
<td>나. 과세
(신설)</td>
<td>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table>
<tr><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납입요건</td><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td></tr>
<tr><td>수령요건</td><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tr>
<tr><td>공제제도</td><td>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td></tr>
</table>
</td>
</tr>
</table>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table>
<tr>
<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
<td>
보수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추가>

※ 주석사항
· 종류 A-U, C2~C5, C-F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
<td>
보수
환매수수료
없음

<table>
<tr><th>Class</th><th colspan="2">A-E</th><th>C-E</th></tr>
<tr><th colspan="2">가입자격</th><td>온라인 가입 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d>온라인 가입 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h colspan="2">판매수수료</th><td>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td><td>없음</td></tr>
<tr><th colspan="2">환매수수료</th><td colspan="2">없음</td></tr>
<tr><th rowspan="6">보수(연, %)</th><th>운용</th><td>0.7446</td><td>0.7446</td></tr>
<tr><th>판매</th><td>0.3687</td><td>0.7000</td></tr>
<tr><th>신탁업자</th><td>0.0400</td><td>0.0400</td></tr>
<tr><th>일반사무</th><td>0.0180</td><td>0.0180</td></tr>
<tr><th>기타비용</th><td>실비</td><td>실비</td></tr>
<tr><th>총보수비용</th><td>1.1713</td><td>1.5026</td></tr>
</table>
※ 주석사항
· 종류 A-U, C2~C5, C-F, C-P, C-P2, W, S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td>
<td>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td>
</tr>
<tr>
<td>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td>
<td>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td>
<td>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td>
</tr>
</table>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06.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06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하나 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Lux) Bond Fund – Euro High Yiel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변경 발효일 1개월 전까지 국내에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하나 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Lux) Bond Fund – Euro High Yiel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보수 (생략) (주석 추가)	보수 (업데이트) ·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62%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BofA Merrill Lynch EUR High Yield 3%Constrained Index(HEC0 Index)(T-1)*95% + CALL*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 S 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클래스원신종MMF(K-5호)

2. 주요 변경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3월 6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2.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 1 항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	제 1 항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

	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2 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2 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제 3 항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06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투자한도>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 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현 행과 동일)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생략)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생략)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생략, 현행과 동일)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생략)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2. 투자전략** **채무증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3. 운용전문인력**	**[1]투자전략** **2. 투자전략** **채무증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석 추가)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Call 금리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 C 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과세**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꿈나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3.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06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06일 1. 운용역 변경 (김현지 → 김정표)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3.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현지 (주석 추가)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정표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이하 생략) 4.어음 (이하 생략)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4.어음 (이하 생략)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추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김현지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김정표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Plus Up 블루칩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1)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2)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06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06일 1)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2)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

	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3.2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표지	(생략)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석 추가)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 1) 비교지수 : (KOSPI200*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3.2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미국토탈일드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06.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9 조(보수)	제3항 [종류A, A-E, C, C-E, C-F, W, S, C-P, C-P2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제3항 [종류A, A-E, C, C-E, C-F, W, S, C-P, C-P2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06일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보수 : 0.050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보수 : 0.03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신탁업자 0.05%	**<보수>** (업데이트) 신탁업자 0.03%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